

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신규 및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

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신규 지정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,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 예고를 하오니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붙임 서식과 같이 의견서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2. 12. 14.

영 광 군 수



1. 목 적

- 우기철 집중호우 및 태풍내습 시 하천범람으로 인해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 손실 등의 우려가 있음에 따라, 이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·관리하여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하고 항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고자 함.

2. 행정예고 기간 : 2022.12.14. ~ 12.29.(14일간)

3. 의견제출 기간 : 2022.12.14. ~ 12.29.(14일간)

4. 공고방법 : 영광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

5. 관계법령

-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12조(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)
-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(지역·지구등의 지정 등)
-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(행정예고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(예고대상)

6.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신규 지정 대상지

| 지구명 | 위치 | 지정개요 | | | 지정사유 | 비고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|--|
| | | 지정면적 (m ²) | 유형 | 등급 | | |
| 합계 | 3개소 | | | | | |
| 남창지구 | 군남면 남창리 905-2번지 일원 | 당초 | 변경 | 침수 위험 | 나 | • 당초 보축 및 축제계획을 하천기본계획 재수립(2022)에 따라 기본계획 현황에 맞춰 재해위험지구 변경 |
| | | 23,355 | 136,111 | | | |
| 매산지구 | 군서면 마읍리 991-10번지 일원 | 434,078 | | 침수 위험 | 나 | • 불갑천의 계획 홍수위가 높아 마읍천 합류부 배수갑문을 통한 유수 흐름이 지체되고 하도내 홍수위 상승시 하천 범람으로 주택 및 도로, 농경지 침수피해가 발생 |
| 입암지구 | 법성면 입암리 347번지 일원 | 301,065 | | 침수 위험 | 가 | • 집중호우로 입암소하천 제방 여유고 부족과 제내측 낮은 지반고로 인한 월류피해 및 내수침수 발생 |

7. 지구지정 후 정비계획

| 지구명 | 사업시기 | 사업예산 (백만원) | 사업내용 | 비고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|----|
| 남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| '22년 이후 (설계중) | 8,000 | • 축제 및 보축 3.1km, 낙차공 3개소, 교량 재가설 5개소 등 | |
| 매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| '22년 이후 (설계중) | 16,586 | • 축제 1.5km 보축 6.5km, 횡단시설물 재가설 5개소, 철거1개소, 교량 재가설 10개소, 철거 4개소 | |
| 입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| '24년 이후 | 23,470 | • 축제 및 보축 6.7km, 보 및 낙차공 7개소, 배수구조물 10개소, 교량 재가설 10개소, 배수펌프장 1개소 | |

※ 구체적인 사업비 및 사업내용, 사업예정 시기는 예산(국·도비) 지원 계획 및 관련 행정절차 협의 등으로 인해 다소 변동될 수 있음.

8. 의견제출

가.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광군청 안전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출방법 : 우편 또는 팩스(061-350-5122)

다. 제출기한 : 2022. 12. 29.(목) 18:00까지

제출기한 내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.

라. 제출처 :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(영광군청) 안전관리과

마. 문의처 : 영광군청 안전관리과 하천관리담당자(061-350-5492)

9.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행위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음.

【영광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7조】

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.

1.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 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. 단,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·확산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 및 배수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.
2.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
3.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 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
4.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작업

- 붙임 1.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위치도 및 전경사진 각 1부.
2. 의견서(제출서식) 1부. 끝.